

의안번호	2203171
의 퇴 인	김성원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0.
추계번호	24A3101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2	안 제9조의2(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-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(제1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3	안 제9조의3(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	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중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술지원을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으로 확대함(제1항제2호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조(산업기술보호 위원회의 설치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“한국산업기술기획위원회를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확대된 산업기술보호 정책추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하므로 센터 지정 자체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2	안 제9조의2(국가핵심 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)	○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3	안 제9조의3(국가핵심 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)	
4	안 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면 관련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아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100여개임
 - －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된 기술은 76개이며, 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24개임¹⁾
 - 개정안에 따라 100여개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에 대해 통지를 받고 판정을 신청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(분야별 전문위원회)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

1)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수는 2024년 6월 기준임

- 안 제19조의2제4항은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예산으로 1억 7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(2024년 예산 기준), 개정안에 따라 회의개최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의3에 따라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·대학 등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, 산업기술보호위원회(분야별 전문위원회)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안 제19조의3제3항은 국가핵심기술 등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예산으로 1억 7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(2024년 예산 기준), 개정안에 따라 회의개최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은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,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더라도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지는 않으므로 회의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²⁾
- 안 제22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중 “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술지원”을 “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”으로 확대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처럼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,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(‘25~’27) 등을 통해 보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립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유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DRM(Digital Rights Management), DLP(Data Loss Prevention) 등 보안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

2)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1년 이후 2024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은 총 285건이며, 이 중 96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됨

[표 3] 보안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1결산	2022결산	2023결산	2024예산
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(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고도화)	일반회계 (산업통상자원부)	50 (2개社)	200 (6개社)	200 (7개社)	200 (7개社)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